장기요양서비스 제공(이용)계약서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1. 제공자(乙)

제공자 (을)	시 설 명	은해사포근한집	기관번호	1-47230-00027
	기관유형	노인요양시설	연 락 처	054-335-3314
	주 소	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동로 424번지		

2. 이용자(甲)

이용자 (갑)	성 명		등급(인정번호)	등급(L)
	생년월일		연락처	
	주 소			
	기 타	□일반 □경감대상자(____%) □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(□의료 □생계) □기타		

3. 대리인 또는 보호자(丙)
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	관 계	'갑'의 ( 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
제1조【 목 적 】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【 계약기간 】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⑥ '갑'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

제3조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①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'을'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,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5일까지로 한다.

② '갑' (또는 '병'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③ '갑' 또는 '병'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.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④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급여비용(30일기준-요양보호사2.3명수가)

등 급	수 가/일	총 금 액	20%	12%	8%	기초수급자(0%)	비고
1등급	86,030원/일	2,580,900원	516,180원	309,700원	206,470원	0원	
2등급	79,810원/일	2,394,300원	478,860원	287,310원	191,540원	0원	
3/4등급	75,360원/일	2,260,800원	452,160원	271,290원	180,860원	0원	

1.-1 급여비용(30일기준-요양보호사2.1명수가)

등 급	수 가/일	총 금 액	20%	12%	8%	기초수급자(0%)	비고
1등급	90,450원/일	2,713,500원	542,700원	325,620원	217,080원	0원	
2등급	83,910원/일	2,517,300원	503,460원	302,070원	201,380원	0원	
3/4등급	79,240원/일	2,377,200원	475,440원	285,260원	190,170원	0원	

※ 시설운영사정에 따른 이원화 운영으로 급여비용은 매월 달리 적용될 수 있다.

2. 비급여비용(30일기준)

항목	단가(원)/일	개수/월(30일기준)	금액	비 고
합계	6,200	30일/월	186,000원	
식재료비	1,800 x 3 = 5,400	30일/월	5,400원 x 30일 = 162,000원	
간식비	800 x 1 = 800	30일/월	800원 x 30일 = 24,000원	

※단,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로 대신한다.

3. 본인부담금 합계비용(30일 기준)

구 분		**금액(원)**		**비고**
본인부담금	**소 계**	**요양보호사 2.3명**	**요양보호사 2.1명**	
		원	**원**	
	급여본인부담금(____%)	원	원	
	비급여본인부담금	원	원	

제4조【 계약자 의무 】'갑'과 '을' 그리고 '병'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① '갑'의 의무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② '을'의 의무
1. '갑'의 건강관리 협조

2. '갑'의 신변이상을 '병'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'갑'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'병'의 의무
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
4. '갑'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의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

제5조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'갑'의 해지
1. '갑'과 '병'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

② '을'의 해지
1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'갑'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을'은 '갑'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 최고하고'갑'또는'병'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【 퇴소 】

① '을'은 제4조 1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'갑'과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갑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③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발생한 이용료가 있을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료 환급분이 있을시 잔액에 대하여 에 대하여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급한다.

제7조【 입소물품 】'갑'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있다.

제8조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① '갑'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21:00까지로 한다
(단 '갑' 과 '을' 또는 '병'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
② '갑'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'을'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'을'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이나 '병'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④ 외출·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은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【 시설관리 】

①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'을'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【 건강관리 】

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
④'을'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⑤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⑥ '을'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, 이상 시 지체 없이 '병'에게 통보한다.

⑦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1조【 시설물 배상 】

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
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이 실비로 산출하여 문서로 제시하는 비용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【 위급시 조치 】

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'을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'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【 임종 및 장례 】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【 식사 및 간식】① '을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【 요양실의 배정 】'갑'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①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②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③ 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④ '갑'은 '을'이 수집・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【 기록 및 공개 】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【 배상책임 】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생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'갑'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'갑'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9조【 입소계약서의 해석 】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년 월 일

입소일시 년 월 일 시 분

乙 시설장 성명 엄성호	**甲 이용자 성명 : (인)**
직위 은해사포근한집원장	**丙 보호자 성명 : (인)**
주소 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대동로424	**대리인 성명 : (인)**